

공시송달공고

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실체 불명·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3년 4월 25일

- 다 음 -

1. 공고내용 : 산림청소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
2. 공고기간 : 2023. 4. 27. ~ 2023. 5. 11. (게시일로부터 15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
* (홈페이지 공고) 산림청, 정선군청
(옥외게시판 게시) 정선국유림관리소, 정선군청
4. 행정대집행일 :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
5. 행정대집행 내용
가. 단체명·주소 : 정선군산악협의회(실체 불명)·주소불명
나. 내용(별지 위치도 참조)

위치	대상	수량	대집행 방법
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	가리왕산 정상 표지석	(L)365mm (W)75mm (H)1080mm	철거 후 원상복구

다. 불법시설물의 행정대집행일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,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산림청에 귀속과 동시에 폐기 처분함.

6. 공고내용
-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일체를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도록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-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7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(033-560-55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04. 25.

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

